

18.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제정경제원공고 제1997-119호 1997. 12. 15

주 요 골 자

- 가. 공장용지에 대하여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, 지금까지는 공장증설부지로 기준면적초과토지중 기준면적의 20%(수도권은 10%)를 추가로 업무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준면적의 30%(수도권은 20%)를 업무용으로 인정하도록 함.
- 나. 지금까지는 일반나대지는 취득후 1년간을, 공장용지 및 주택신축용지는 취득후 3년간을 비업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나대지는 취득후 2년간을, 공장용지 및 주택신축용지는 5년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도록 함.
- 다.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업기준을 적용하는 대상부동산을 지금까지는 농경지, 임야, 목장용부동산, 체육시설업용 부동산, 휴양시설업용 부동산, 주차장업용 토지, 매매용 부동산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매용 부동산이 외에는 주업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.
- 라. 지금까지는 주차장업용 토지, 체육시설업용부동산, 블록제조장 등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3% 내지 20%에 미달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되 수입금액기준은 주차장업용 토지,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, 블록제조장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액의 1%로 하향조정 함.

개 정 이 유

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